

중계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4.

방송통신위원회

□ 승인일 : 2011. 4.15.

상호	대표	방송구역	심사결과	시청자의견
야로유선방송사	윤연욱	경남 합천군 야로면 전역	재허가	없음
광명유선방송사	배상환	전북 진안군 마령면, 성수면, 백운면 일원		
(주)에이취케이씨	한종국	부산 기장군 정관면 전역		
가야유선방송사	하장옥	경남 합천군 가야면 전역		
산서유선방송사	박병일	전북 장수군(산서면), 임실군 (성수면, 지사면)		
마천유선방송사	유점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전역		

끝.